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우선적 확충·정비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8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02. 04.
3. 회 부 일 : 2025. 02.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

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u> <u>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u> <u>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u> <u>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u> <u>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u> <u>야 한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¹⁾.

1)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중이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4%에 불과하고, 74%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문제가 있음.

<자전거도로 현황('23년 기준)>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사진				
통행	자전거등	자전거등, 보행자	자전거등	차, 자전거등
시설 기준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	분리대, 경계석 등 으로 차도와 구분	안전표지나 노면표 시로 차로와 구분	다른 차와 상호 안전 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
현황	3,763km (14.0%)	20,023km (74.5%)	1,015km (3.8%)	2,071km (7.7%)

※자료 : 행정안전부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000건 이상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21년 ~ '23년)>

구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자전거 사고	전체 (교통)	점유율 (%)	자전거 사고	전체 (교통)	점유율 (%)	자전거 사고	전체 (교통)	점유율 (%)
2021년	12,653	203,130	6.2	183	2,916	6.3	13,273	291,608	4.6
2022년	12,564	196,836	6.4	190	2,735	6.9	13,117	281,803	4.7
2023년	12,170	198,296	6.1	164	2,551	6.4	12,726	283,799	4.5

※자료 : 도로교통공단

다만, 개정안과 같이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질적으로 확충·정비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확충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